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정영길 의원 외 15명)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정영길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737 |
|----------|-----|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정영길 · 배한철 · 장대진 ·
장용훈 · 이운식 · 황병직 ·
이진락 · 김인중 · 김창규 ·
황이주 · 조주홍 · 박정현 ·
조현일 · 김종영 · 박문하 ·
김지식 의원 (16명)

1. 제정이유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관광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 · 시행(안 제4조)
- 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안 제5조)

라. 관광환경 대상 조성 지원사업(안 제6조)

마.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규정(안 제7조)

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포상규정(안 제8조)

3. 조 례 안 : 붙임참조

4.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51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5. 관련부서 협의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법제심사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 해당부서 검토의견 : 의견없음

6. 참고사항

-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대상시설”이란 제5조에 따라 관광약자들이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 ② 접근을 보장하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관광환경 조성지원)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상시설 및 환경개선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참여의 촉진)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51조(권역계획) ① 권역계획(圈域計劃)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권역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③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를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1.2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2.8.2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대피소
- (5) 공중화장실
-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기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며.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전문개정 2012.6.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11.27.]

[별표 1] <개정 2014.7.14>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1. 교통수단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바. 광역전철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2. 여객시설

-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 아. 광역전철의 역사

3. 도로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자 치 법 규 명 |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 |
|-----------|---|---------------|-------------|
| 평 가 담 당 | 감사관실 | 직 급 성 명 | 행정7급 김덕환 |
| 입안주무부서 | 관광진흥과 | 통 보 (조 치) 일 | 2017. 9. 1. |
| 관 련 조 문 | 검 토 결 과 | | 조 치 사 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결과 부패유발요인 없음. | | |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해당여부 | 응답내용 | 첨부사항 |
|------|----------------|------|-----------|-------|
| 준수 | 준수부담의 적정성 | X | ① 적정 | 해당없음. |
| | | | ② 높음 | |
| | 제재규정의 적정성 | X | ① 적당 | 해당없음. |
| | | | ② 약함 | |
| | | | ③ 강함 | |
| | 특혜발생 가능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② 있음 | | | | |
| 집행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X | ① 구체적·객관적 | 해당없음. |
| | | | ② 추상적·주관적 | |
|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X | ① 적정 | 해당없음. |
| | | | ② 부적정 | |
| | 재정누수 가능성 | X | ① 명확 | 해당없음. |
| | | | ② 불명확 | |
| 행정절차 | 접근의 용이성 | X | ① 있음 | 해당없음. |
| | | | ② 없음 | |
| | 공개성 | X | ① 예측가능 | 해당없음. |
| | | | ② 예측곤란 | |
| | 예측가능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 부패통제 | 이해충돌 가능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4 **해당부서 검토의견** (관광진흥과)

검 토 의 견 서

조례명 :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실·과 | 주요내용(조항) | 검 토 의 견 |
|-------|----------|---------|
| 관광진흥과 | 전체 조항 | 의견 없음 |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대상시설 및 환경개선(안 제6조제1항제1호)
-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안 제6조제1항제2호)
-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안 제6조제1항제3호)
-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안 제6조제1항제5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 되지 않음.
- 대상시설 및 환경개선(안 제6조제1항제1호)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될 경우 비용 발생을 산출할 수 있음.
-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안 제6조제1항제2호)는 매년 추진하는 경북관광 홍보물 제작 사업(2017년 예산 180백만원)에 포함하

여 추진할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음.

-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안 제6조제1항제3호)과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안 제6조제1항제5호)은 매년 운영하는 경북관광 아카데미(2017년 예산액 50백만원)에 교육 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운영할 경우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일부 증액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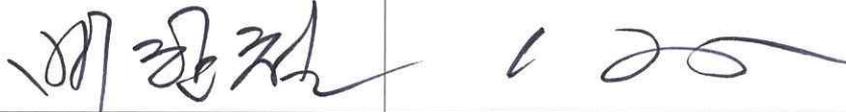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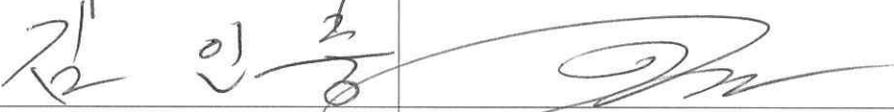
따라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관광진흥과 지방행정주사 홍성찬 (054-880-3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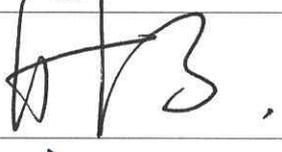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의원명 | 서명 | 비고 |
|-----|--|----|
| 이광진 |  | |
| 장민 |  | |
| 장흥훈 |  | |
| 이은식 |  | |
| 황병익 |  | |
| 이진각 |  | |
| 김인홍 |  | |
| 김창규 |  | |
| 황희수 |  | |
| 조주홍 |  | |
| 정영길 |  | |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의원명 | 서명 | 비고 |
|-----|--|----|
| 이정권 |  | |
| 조희원 |  | |
| 김종영 |  | |
| 박은화 |  | |
| 김지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